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10. 12 선고 2018가단972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농업협동조합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0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33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14. 10. 23.부터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706,2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최문수

별지